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22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2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2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2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2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5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의원님의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안 그리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님의 검사의 폭넓은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의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수사 부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안건 3건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주시 국민의힘 전 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 등 수사방해 의혹 그리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사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법안1소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에 법안1소위를 계속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는 일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10시09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네 차례의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을 심사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삭제 및 관련 수사절차 보완 사항, 신규 제도 등에 대해 심도 있고 꼼꼼하게 전체 일회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에 추가된 홍기원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소위자료 두 권이 있지만 새로 들어온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안 부분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에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사실관계 확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여 보완수사요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보완수사가 가능한 사건은 송치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의 범죄와 4개의 사건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 내용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면서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소속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공소청법에 있는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신청으로 강제처분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대상사건을 제외하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공소제기·공소유지를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 요청과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완수사 대상사건 중에서 중수청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 부분을 보아 주십시오. 11개의 범죄유형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수청 관할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런 진술 등을 기록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조서를 써야 되는지 또 그런 기록이 남았을 때 증거능력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만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제처분에 관해서 공소청벌에 있는 사건심의위의 심의 절차는 필요하다면 공소청벌에서 따로 규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해서 홍기원 의원안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요.

보완수사기한, 3개월 이내에서 검사가 기한을 정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요. 사경은 보완수사기한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사경은 정당한 이유 관계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요. 사경이 보완수사요구 미이행 또는 현저한 지연 때에는 검사가 이행촉구부터 해야 됩니다. 이행촉구를 하고 나서 이행촉구를 미이행할 때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더 추가해서 직무배제 요구 시에는 20일 이내에 조치 후 통보를 해야 되고 징계요구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긴급 사건의 협력의무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사경은 중요·긴급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때 검사와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되고 중요·긴급 사건의 송치·송부 여부 결정 전에 검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검사는 공소유지 필요시 사경에 공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으로 범죄혐의 통보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경 송치·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와 관련해서 20일 이내 조치라든가 1개월 이내 징계 여부 이런 내용은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과 충돌될 우려가 있음을 보아 주시기 바라고, 사경이 7일 전에 연장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그 범위가 정확히 없다는 내용 그리고 협력의무에 대해서는 수사준칙에 있는 내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새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송치사건의 범위 및 이의신청권 확대와 관련된 홍기원 의원안 내용입니다.

송치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범죄 인정이 되는 사건 외에 사경이 인지한 사건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보완수사 대상사건을 송치 대상사건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권을 확대해서 고소인 외 고발자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사건을 송치사건에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지사건을 송치 대상으로 넣고 이의신청에 고발인도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전건송치와 유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의 이의신청권 확대 부분도 앞의 많은 안과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고소·고발인의 불송치결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 도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고발인이 사경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기록이 아직 공소청에 있으면 공소청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실질화의 내용인데요, 수사준칙에 있는 내용에다가 고소·고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의원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넓게 허용하고 개별 수사권 조항에서 ‘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대상을 사경 송치사건 그리고 공수처 송부사건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직접수사권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 및 사경이 범한 모든 범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직접 인지한 사건 그리고 앞에서 보완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인지사건은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일부 직접수사권까지 넣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 부분은 중수청 관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경의 모든 범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재직 중에 범한 범죄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확대한다면 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라든지 시정조치요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균형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점식 의원안에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의 경우 3개월 이내 검사가 보완수사 기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경은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그다음에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중대범죄등 협력의무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대범죄등에 한해서 검사에게 수사개시 통보하고 검사는 사경에다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조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재수사요청에서도 송치요구권이 신설되고 있는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이의신청권 확대 및 이의신청기간 신설에 대한 정점식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등의 이의신청기간을 90

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신청기간 부분에는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0일이 있을 수 있고 60일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안이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정점식 의원안에 있는 공소취소 관련 규정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공소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제225조를 삭제하고 있고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취소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소기각 결정 사유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공소취소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형사절차에서는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소취소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래서 정말 공소취소를 할 수 없는가 해석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론상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공소취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소취소를 금지하려고 하신다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방안이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홍기원 의원안 1번, 보완수사권 및 사실관계 확인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를 금지하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사건 및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일정 유형의 범죄 및 사건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국가 업무의 효율성과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과 증거 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이 있으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개정안대로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하나의 사건 중 일부는 보완수사 대상에, 일부 혐의는 보완수사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하나의 사건 처리 절차가 다시 분절되고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민생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대상 범죄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할 경우 필연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열거된 유형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의견 청취 및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강제수사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수집된 진술 및 자료의 증거능력이 불명확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제19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수사의 예시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성격이 수사인지 수사가 아닌 다른 제도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실질이 여전히 수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다른 이질적 개념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법칙의 예외 등 증거능력 관련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고, 증거능력이 없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위 정보를 법원에 현출할 경우 적법절차 위반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이상 면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상 기본권과 적법절차가 충실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검사의 심증 형성 자료로만 활용되고 공판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관계인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임의적인 절차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출석이나 허위 진술에 무력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항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되어 보완수사요구로 증거 관계를 보완해야 하므로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및 검경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이행 예외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고 중요·긴급 사건에 대해서 검경 협력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발의된 다른 개정안들에 있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검경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검토하여 정합성 있는 개정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송치사건 확대 및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항목입니다.

검사에 대한 송치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불송치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송치하는 방안,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이 지적되고 사건 전모 파악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요한 병존사건에 대한 송치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번, 고소·고발인 불송치결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 도입 항목입니다.

불송치결정 사건기록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이의신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토록 하고 거부 및 제한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송치사건은 이의신청·재수사요청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어 너무 폭넓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 5번, 검사의 수사개시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제한적으로나마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

권을 삭제한 공소청범의 취지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항목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송치 제도를 전제로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송치 제도는 이의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송치하는 방안,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높은 사경 인지 사건, 중수청 수사 사건과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병존사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송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이의신청권 확대 및 이의신청기간 신설 항목입니다.

개정안이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 포함시켜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불송치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경의 판단에 사실상 확정력 부여를 강화해 현행보다 피해자 등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8번, 공소취소 관련 규정 삭제 항목입니다.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소송조건 결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공소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유지 및 일부 범죄의 전건송치 등 수사권 관련 조항 정비 부분은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개시권, 수사권, 보완수사권 유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종전의 의견을 유지합니다.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 의원안은 모두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홍기원 의원안 중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규정한 부분 및 정점식 의원안 중 공소취소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은 추가 검토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개별 조문에 대한 심사 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2건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그동안 저희가 발의해서 기존에 논의했던 안과는 또 다른 결의 두 가지 안이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출발점을 좀 다시 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잘못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혼을 내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부패하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기능적 권력분립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검사가 공소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수사권·기소권, 게다가 우리나라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해 주고 있지요, 형집행권 있지요. 여러 가지 권한들이 다 집중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검사 개개인이, 아무리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싶은 사람이 검찰에 가더라도 그 권한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유혹에 시달리겠지요. 그 권한을 함부로 쓰면서도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 사건을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돼. 이게 나의 소명이야’라는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에서도 혹은 잘못된 그릇된 국가관에 의해서도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나왔고 간첩 조작 사건들, 대공수사에서 수많은 조작 사건들 피해자들, 지금까지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수사기관도 수사의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성이 부여되거든요. 지금처럼 수사를 검찰이 더 할 수 있냐 없냐가 남아 있으면 경찰은 수사에 대한 자기들의 온전한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어차피 검찰 가면 또 검사들이 수사할 거니까 기소하는 사람들이 최종 책임지면 되지는 생각을 해서 책임성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사가 잘못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고요. 기소가 잘못되면 그것은 검사, 공소관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발의된 법들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검찰개혁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법들인 것 같아요. 특히 예외적 혹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식의 홍기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수사 할 수 있어요.

법을 잠깐 보면, 196조 1항 2호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1항 1호에서는 여러 가지 11개 범죄를 나열했지만 2호가 더 심각합니다. 2호 가·나·다·라 보면 송치사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피의자가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구속된 사건은 다 직접수사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나목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해석상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다목과 라목도 보면 이렇습니다. 다목에서는 ‘2개 이상의 송치사건들이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병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건이 2개 이상이면 다 직접수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조금 이따 왜 심각한지 말씀드리고.

라항 보면 197조의3 6항 이것은 검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송치요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에 ‘시정조치 해’라고 굉장히 폭넓게, 지금도 보완수사 이행했냐 안 했냐 가지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이때에도 시정조치요구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고 ‘제대로 이행 안 했네’, 송치해서 받아서 직접수사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을. 그리고 198조의2 2항 같은 경우는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송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245조의7 제2항 이 부분은 법이 좀 제대로 수정을 안 해서 이상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전해해서 해석하면 기존의 고소인 이의신청 사건 송치받은 것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 이의신청, 우리는 고발인 이의신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면 다 직접수사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수사가 거의 모든 사건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관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검사가 그래도 수사개시 못 하고 별건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냐. 그러니까 입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수사 하는 매우 제한적인 직접수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거짓말이고 매우 나쁜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검사가 횡령 사건으로 송치돼 온 사건을 보완수사로 직접수사를 해서 ‘나 이것 뇌물죄로도 한번 엮어 볼까’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 뇌물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보세요’라고 수사 통보를 하겠지요, 이 홍기원 의원안에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뇌물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검사가 가져와서 직접수사가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던 병합, 여러 가지 송치받는 방법, 시정조치요구 했는데 안 들으면 ‘야, 시정조치요구 했는데 제대로 이행 안 했으니까 송치’ 해서 받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송치를 결국에 받습니다. 송치받아서 직접수사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사는 지금 홍기원 의원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기만 하면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 할 수 있다라는 안입니다. 매우 심각한 안이에요. 지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범죄피해자를 우리가 폭넓게 보호하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검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관 간의 견제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중첩적으로 견제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잘못된 수사를 걸러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과정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 방식

은 오로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다 줘서 검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검사님, 제발 제 사건을 잘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읊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수사과정의 통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라든가 이의신청권을 보다 폭넓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접근하게 만들어야지 검사의 수사권, 직접수사권으로 이것을 모두 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철 지난 얘기고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검찰개혁이 이렇게 논의되게 된 것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기됐던 주된 원인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고 결론 내고 기소 즉 소추권을 행사한 뒤에 공소유지까지 진행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인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과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중수청이 분리가 되고 앞으로 공소청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가 수사권을 직접수사 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사권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사가 공소관으로서 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차원도 함께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찰의 수사가 대부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을 했겠습니까만 그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류들이라든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극단적 사례로 예컨대 수사 과정에 불법이 개입된 경우 등등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차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찰이 범죄혐의로 입건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점검 과정을 그러면 반드시 다시 경찰의 손을 빌려서 해야만 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능적 권력 분립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어느 범죄에 대해서든 무한정 행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적법절차라든지 증거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요소 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 지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적 권력분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관점에서 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수사만 지금 자꾸 언급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차관님은 지금 정부의 입장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실현실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만 붙들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피해자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의 수사 관련된 통제를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즉 중수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수청에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의 각 조직이나 지금 설계되고 있는 범위를 본다면 예컨대 광주 지역에 설치되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전북·전남·제주까지 3개의 도 단위를 관할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수청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 대해서 적절히 수사 단서를 수집해서 이와 같은 수사 은폐까지 수사를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같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전북·제주까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직 기강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예요. 기관 간에 서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제도 설계까지는 국회가 합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 뒀으면 그것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가 이것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숨겨?’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숨기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 혹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정부가 만들어야지요.

지금 검사들 보십시오. 검찰개혁 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뭐라고 합니까? 국회가 논의하는 법이 쓰레기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조직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경찰이 못할 거다라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합니다. 그것 정부 역할이예요. 정부가 공직 기강 바로 세우세요. 어떻게 공직 기강 바로 세울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못할 겁니다’, ‘안 돌아갈 겁니다’만 얘기하면…… 지금 관찰자입니까? 정부 관계자 아니예요? 관찰자예요? 그것을 그러면 국민들이 해 줘야 합니까? 국회가 나서서 공직 기강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계속 푸시하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무한정 확장된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진술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1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홍기원 의원안의 구속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사건을 검사가 직접 조사하도록 한 부분 그다음에 신병 관련해서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 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 인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는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한지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등등을 조사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차관님, 지금 검찰이 극도의 불신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민주 진영의 국민들 또 당원들,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 견해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검찰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표적수사를 넘어서 정치적 사냥극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최대한의 개혁이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든 권한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딱 두 가지지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사람이 붙잡히고 이런 사건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보완조사를 해야 할 일이 또 새롭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 이 시간적인 촉박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문제점을 느끼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경찰에게 내 의중을 전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수사를 해 오고 또 즉시적인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돼 왔을 때 그 의문을 풀고 기소 내지는 불기소결정을 할 여유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든 제대로 응하지 못했을 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촉박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보면 경찰과 검찰의 사전적인 협의 이걸 강화하자라는 안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서 수사관에 대한 교체요구권 또 징계요구권 이걸 부여해서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들자,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공백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자료를 하나 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적인 촉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사전 협의 강화 그리고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응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구되는 교체요구권 그다음에 징계요구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소견을 한번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지금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하기 힘든 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공백 문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 논의를 좌우하는 핵심 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이 길더라도 좀 설명을……

○**소위원장 김승원** 회의 진행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님 안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시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에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배포된 자료 관련해서 검찰개혁TF 단장이 간략히 사례 설명을 드리도록……

○**소위원장 김승원** 사례?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관련입니다.

○**박은정 위원** 자료를 여기 배포해 놔 가지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에서 박균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배포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서류로 검토하면……

○**소위원장 김승원** 몇 페이지나 되는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핵심적인 사례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너무 시간이 길지 않게 핵심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네다섯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면 3분 안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러면 허락해 주시면 TF 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분 안에 말씀을 해 주세요.

○**법무부검찰개혁지원TF단장 김준선** 김준선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사건은 잘 아시는 사건이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의 대표적인 게 방금 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암장하는 유형인데요.

2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건은 현직 경찰이 피의자한테 불송치 권한을 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뇌물을 수수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경찰관이 피의자한테 주소를 자기 소속 경찰서로 옮기라고 한 다음에 한 16건을 이송·재배당 받아 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건 또 3년간 캐비닛에 은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결국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무배제·교체나 수사 관서 지정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최초에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뇌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은폐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제도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기록 자체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증거 관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안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경찰관의 뇌물수수 단서를 발견한 것이지 원래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말하는 기존의 다른 제도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페이지, 검사의 직접 대면조사가 필요한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스토킹으로 덮일 뻔한 계부의 의붓딸 성착취 사건인데요. 계부가 의붓딸에게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가지고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부가 의붓딸에게 보낸 메시지 중 ‘여보’라는 호칭을 쓰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의붓딸을 직접 면담하고 설득한 결과 중학생 때부터 20년간 이어진 계부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해 가지고 징역 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진술들을 확인한 사안인데요. 가족 내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려워 진술 확보에 굉장히 신뢰 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붓딸을 다시 조사해 보라’ 이런 약간 막연한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4페이지, 세종시 여중생 집단강간 등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또래 중학생들로부터 집단강간을 당했는데 신고를 주저하다가 아주 오래 뒤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고 나중에 재수사요청을 해 가지고 송치는 되었지만 충분한 증거가 많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장소를 특정했고 그다음에 핵심 목격자를 설득해서 당시의 상세한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경찰에서 피해자를 한 네 차례 조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경찰의 의지의 문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경찰서에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게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또 이 경우에 다른 수사 관서를 지정해 가지고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가능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사건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세 차례나 계속 요구함에 따라 경찰에서 어느 정도 보완은 했지만 결국은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좀 난항에 빠졌던 사건이고요. 잘 아시는 사건이라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시간이 지금 3분 넘었는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검찰개혁지원TF단장 김준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사중지 후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소재 발견된 사기사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사중지

가 된 사건들은 피의자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일반 사건들도 증거 관계 확보하기가 힘든데 수사중지가 됐던 사건들은 증거 관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긴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잡혔을 때, 소재 발견이 됐을 때 물론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긴급보완수사요구라든가 검경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쉽게 끝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항상 그런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증권범죄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 또 사기죄같이 법리가 복잡한 사건들, 피의자들이 많은 사건들, 피의자가 굉장히 부인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의 문제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게 됐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검사가 증거관계를 확보하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더 뭐 토론하시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뭐……

○법무부차관 이진수 구속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컨대 최근에도 경주지청에서 사기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검사가 수사를 해 보니까 이게 사기사건으로 돈을 못 갚은 것은 맞는데 그 경위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직적 은밀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냥 송치사건으로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일단 강간살인으로 기소했었는데요. 그와 같이 검사가 증거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을 때 징계요구와 교체요구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즉,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고 검사의 판단이 다 완벽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완결성을 높였을 때 경찰관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최소한 감찰, 즉 징계사유까지 해당이 되어야 징계요구 내지는 교체요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 여러 가지 수사 단서로 봤을 때 추가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징계성의 부정적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 한 말씀드리면,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 수사의 거의 끝자락 아닙니까? 거기서 검사가 개입해서 부실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특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부터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그 검사가 끝까지 자기의 이름과 책임감을 걸고 압수·수색부터 쪽 같이 경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초반부터 하면 피해자라든가 혹은 억울한 피의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텐데 왜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경찰이 다 해 가지고 와서 끝 무렵에 거기서 보완수사를 해야겠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이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 어차피 수사는 지금까지 경찰이 90% 이상을 하는데 검사님들이 전문적인 법 지식과…… 또 사실은 훈수 두는 게 더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매몰되거나 집중되거나 놓치는 것이 있는데 검사들은 좀 떨어져서 보면 ‘여기도 압수·수색 하면 되겠다’, ‘여기에도 여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수사해 봅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남이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을 하는데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사들의 왜곡수사라든가 부실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어차피 70년 만에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라든가 공판중심주의라든가 굉장히 많은 형사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만큼 큰 변화는 아마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되 좀 지혜를 모아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간략히 현실적인 한계만 좀 말씀드리면요.

1년에 송치되는 사건이 지금 한 130만 건 정도 되고 불송치 송부되는 사건이 한 50만~6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 송치나 불송치 기준으로 봤을 때 180만~190만 건 정도가 송치·불송치 송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 산정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형사부 검사가 1000여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영장 단계에서 그와 같이 검토를 하고 단계부터 협력은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와 같은 사건을 관리하고 통제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라든가 양형 자료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일단은 데이터센터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고 그걸 나중에라도 전문가라든가 혹은 사건관계인의 이의가 들어왔을 때 수사 전 과정을 한번 검증을 해서 사건처리 지연이든 또 왜곡수사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면, 법왜곡죄의 신설로 증거인멸이라든가 누락도 수사기관의 중요한 범죄가 되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것도 제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차관님, 아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130만 건이 된다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 송치……

○**박은정 위원** 사건 송치가?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고하시기로는 형사사건 전체가 한 130만 건, 140만 건 중에서 작년에 한 77만 건 송치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 해에 검찰에서 처분한 사건 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박은정 위원** 처분사건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처분사건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박은정 위원** 처분사건이 77만 건이라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처분사건이 한 130만~140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처분사건이 130만~140만 건이라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송치해서 재수사요청 해서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통계가 조금…… 검찰국에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형사사건이 한 해에 180만~190만 건이라는 건데, 그렇지요? 거의 200만 건에 육박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사사건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사건처분 기준으로 130만 건 말씀드렸고요. 불송치 송부 관련해서 통계가 한 50만~60만 건 정도가 불송치 송부됩니다.

○박은정 위원 130만 건 그 통계가 조금…… 다시 확인해 보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홍기원 의원안 196조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수사, 2차수사를 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카카오 김범수 등 사건이거든요. 현재도 금지되어 있는 별건수사가, 검사가 지금도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보완수사·2차수사로 별건수사를 못 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별건수사라고 아무리 피의자가 항의하더라도 별건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되고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원 의원안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행 보완수사권·2차수사권, 196조 2항에 따른 그 수사권보다 훨씬 더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을 보시면 가목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 이게 현행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인데 여기 나목이 들어가 가지고 고소·고발 외의 인지수사 한 사건도 모두 송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 송치하도록 이번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지사건까지 다 송치하도록 이렇게 홍기원 의원안에 넣으면 사실상 이것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건송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021년에 전건송치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2021년 이전에 5년간 전건송치를 시행해 보니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그것을 뒤집어서 기소한 비율이 0.5~0.6%였습니다. 그러면 그 0.5~0.6% 정도를 조금 더 불송치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전건송치를 폐지하자, 그래서 폐지가 된 거거든요.

폐지한 이유는 뭐냐 하면 피의자가 불이익한 신분,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신분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좋겠

다. 0.5%를 제외한 그렇지 않은 너무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나머지 사건에서 어차피 검찰에서 불기소할 건데 검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붙잡아 두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불이익 때문에, 피의자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지금 현행은 0.5~0.6%를 통제하고 있는가.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해서 90일 동안 검사가 보고 재수사요청을 해서 재수사해서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들 중에서 지금 현재 불송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기소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불송치를 뒤집은 사건들을 보면 2023년도부터 최근까지 비율을 보면 0.5~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건송치 제도가 있었을 때 뒤집었던 사건들, 뒤집혔던 사건들이 여전히 불송치 제도하에서도 재수사요구로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가 된 이유가 있고, 그런데 홍기원 의원안은 사실상 전건송치를 다시 부활시켜서 전건송치를 폐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 오늘 차관님께서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들을 잘 보고를 해 주셔서…… 검사가 70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검사가 수사를 잘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데 검사가 잘했던 부분만을 너무 계속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논의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님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면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형소법안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검찰은 또 법무부는 ‘그것은 부족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려면 이런 것 좀 필요해’라고 보고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형소법을 개정하게 되면, 제가 타임라인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900여 개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그러면 7월 중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쳤을 때 8월·9월,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90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 한 179개—검찰국에서 보고한 게 179개더라고요—그것의 제·개정이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홍기원 의원안에서 검사의 수사권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본적으로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예컨대 다른 사건으로 관련 사건 내지는 수사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준항고 제도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등의 내외부적 통제장치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수사요청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 송치사건이 기소 처리된 사건 비율이 0.5~0.6%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수사요청 제도는 90일간 기록이 송부되기는 합시다만 그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 당사자가 호소하는 내용, 추가적인 증거수집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록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론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높아지지…… 그러니까 검사가 이 불기소처분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전건송치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다음에 종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중죄와 경죄를 구분하지 않고 이와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경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나라는 사실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결론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한 번 더 판단하는 교차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방안 등에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안을 발의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에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강화 방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원안 등을 저희가 보고, 물론 저희들도 이 내용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조문화 작업 등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입법지원의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그것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위법령 등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법률이 179개, 기타 법령 등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되는데요. 이것을 법률 제·개정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각각의 법률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절차를 부칙 개정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방안에 대해서 국회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거기서 많은 교수님께서 비교법적 검토를 하면서 검찰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거나 수사지휘를 하거나 이렇게 수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그런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 완전 분리로 갈 경우에,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건을 잘 관리하고 또 사건의 암장이나 사건 지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건송치 관련해서도 피해자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관련된 예시도 보여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 뇌물 사건이라든지 뇌물 수사 무마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있어서 사망하거나 광주 여고생 살인이라든지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해든이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취약한 상황, 지적장애인이란지 성매매로 송치된 청소년이라든지 계부한테 학대당한 의붓딸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강간을 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일부만 불송치 권한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를 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심지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공적인 기관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접하는 순간부터 절망에 휩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의신청서를 쓰고 그 이의신청서를 손에 들고 자살을 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를 피해자단체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경찰이 갖되 이것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건송치 폐지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사건 암장이나 사건 지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잘 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세계 해 주셔서 혹시 보완수사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초기 단계부터 아주 밀접하게 수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대신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네 가지 항목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해외 입법례 관련해서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지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지휘를 하고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또한 검사가 피신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기소한 사례가 있듯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직접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본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경은 48시간 내에 구속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고 구속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조사를 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일본에서도 실무 사례상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범죄인정 여부, 적법절차 여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한 뒤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조사를 하는 국가들의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1%가량으로 유지되는 등 굉장히 무죄율이 낮은 정밀사법 부분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에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사협력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사절차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과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검찰과의, 분명히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요.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의 행사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협력의 강화 차원에서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대부분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증거 판단도 하고 수사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사협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좀 이렇게 검사의 판단을 시급하게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즉 수사협력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서 그 단계에서 검사에게 요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협력관계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권한과 책임과 그다음에 협력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사협력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영장을 기각한 사건을 사경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신병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이 기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범죄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1차 수사기관이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 결론을 뒤집고 다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담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국선변호사 제도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나 가정폭력

이나 스토킹 사건 등에 대해서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지금 필수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번호인 제도도 완벽하게 기능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의신청절차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뇌물사건이라든지 여러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일정 정도 일치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컨대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가 임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 그 사건을 누가 이의신청을 하며 또한 그와 같이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기록에서 어떻게 추가 수사 단서를 찾아서 그것을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결론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보완수사요구는 현행법에 있는 제도니까 저희는 보완수사요구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세 번째 요청드리는 건데 아까 차관님 말씀으로는 법안 성안 작업을 돕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법안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 몇 가지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현행 제도도 불필요하면 불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모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모아 주지 않으면 의견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정리해 주신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례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유무하고 관련 없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의견을 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나 교체·징계 요구 이게 효과가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요.

○김한규 위원 아니, 없으면 그냥 빼자고 의견을 주셔도 좋아요. 이게 불필요한 제도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효과는 있는데 너무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 선택적으로 검사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징계에 회부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강제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는 된다고 실제 사례에서 나온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안 논의한 지도 벌써 몇 차례가 됐으니까 모아 주시면 좋겠고 일단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는데 지금은 계속 무언가 의도적으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썼다고 하셨는데 실무자가 안 썼다고 해서 갖고 확인해서 조속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입장을 또 바꾸셨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징계요구와 교체요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홍기원 의원님 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홍기원 의원님 안에 보완수사요구 관련해서 실효성 강화 방안이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제출을 못 해 드렸는데요.

○**김한규 위원** 홍기원 의원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의견을 주시더라도 기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 그냥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안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경험을 통해서 판단한 의견 이것만 주시면 되는 거지요. 특정 의원의 안하고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러니까 마침 법안이 계속 발의돼서 저희가 제출이 지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속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에 조금 저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선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에 보면 고소장·고발장 위조 건도 나오는데 우선 고소장·고발장은 요새 정보공개청구 하면 다 받는 것 같아요.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 고소장·고발장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피고발인한테 송달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인도피라든지 증거인멸,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고소장 사본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로 피의자에게 고소·고발장을 송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피의 위험이 있어서 바로 송달시키는 것은 조금 구체적인 사건마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주는 것 같아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거에 비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의견은 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했을 때 그 건수가 거의 백몇십만 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분들이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가 지게꾼……’ 비슷한 푸념도 하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온 사건 거의 도장만 찍어서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도입하려는 게 예컨대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 혹은 피의자나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이 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의견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게 수사 아니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하는데 우선 이런 의견 제출인들이 검사에 대한 면담 신청을 하고 자신들의 하소연을 말하고 싶어 할 때 검사와 면담을 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와 같이 검사에 대해서 면담 신청 등을 하는 것이……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찬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도 설계가 어렵다고 보고요. 찬반 둘 중의 하나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반대의견입니다.

즉, 반대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가 면담이 필요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면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어쨌건 수사 과정에 불만이 있는, 그것이 이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검사에게 최종 처리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 의견을 들어 달라 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참작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은 그것은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봐야 그 많은 사건 중에 하자가 있는 사건 또 불법수사가 있는 사건을 골라낼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직접 진술을 청취해야 될 필요성이 무척 큼니다. 그래야 적정한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면담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것으로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 검사가 면담권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환해 가지고 진술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이분들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토대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사가 기소 등을 판단하거나 보완수사요구 등을 내려보냈을 때 이것은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피의자신문조서는 다 증거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당사자가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동일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참고인들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어차피 공판장에서 당사자가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된다면 판사가 피고인신문을 하든가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동일한 내용이 증거능력을 갖추거나 법정 진술로 인정이 되겠지요. 그것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 갖고 수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것 같지는,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증거능력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진술이나 자료 등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막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것은 당사자신문이나 피고인의 의견을 통해서 법정에, 공판조서에 기록되는 절대적 증거능력이 있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건데 미리부터 그걸 딱 결론을 갖고 증거능력 없는 것 갖고 어떻게 수사가 되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내용이 면담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법무부에서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법무부차관 이진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면담을 할 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면담의 시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피의자 같은 경우에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수사절차이고 각종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담을 지금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검사분들이 기록만 봐서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이 제시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90%는 다 기록만 보고 결정하고 약식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간략한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또 기록만 보고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에서 답답해하는, 그러면 보완수사를 수사권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요구권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주로 경찰서에서 수사할 때 발생한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건 건수라든가 수사인력이 그쪽에 많기 때문이겠지요. 보완수사 결정이 나면 그거를 중수청으로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중수청에는 검사라든가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는 거니까 경찰 수사에서 예컨대 부실수사라든가 불법수사가 중수청을 통해서 보완되거나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사건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간략한 보완으로 신속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유형도 있고요.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이나 예컨대 사건에 대한 결론을 잘못 내린 경우, 이런 경우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될 텐데요. 즉 간략하게 담당 경찰관이 보완할 수 있는 사례까지 전부 다 다른 중수청 등의 담당자가……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차관님 보완수사요구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안 되는 중대한 뭐가 있으면 그거를 중수청으로 보내는 방안은 어떠냐 그런 거를 한번 대안으로 저희 토론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 묻겠습니다.

결국에는 흐름은 공판중심주의고 당사자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어느 분이 형사절차도 실체적 진실 발견, 물론 그것은 저희가 추구해야 될 형사소송의 이념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 형사 법정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증거에 의해서 혹은 판사 개인의 어떤

한계라든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법정에서의 진실, 사실확정이 되는 것인데 어쨌건 설계는 저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로 설계되고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체계의 대변혁에 있어서 법원이 공판중심주의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법정에서 증거능력도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증명력도 인정이 돼야지만 유죄의 증거든 채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최근 근래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확대에 관해서 법원에서도 그래서 압수·수색 할 때부터 당사자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을 불러서 심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런 걸 통제를 하겠다 제한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압수·수색 심문제도 내신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여기서 역할을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수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형사소송법 보면 법원이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편년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체제에 보면 법원이 앞에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구속이라든가 검중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다 법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수사 파트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체계가,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들의 구도가 정말 공판중심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취지를 지금 70년 지나서 잘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결정을 할 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서영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44페이지부터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가 사경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의 헌법상·법령상 침해 등의 경우에 사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상 내용으로 보면 수사 지연의 경우에는 조항 간의 내용이 정치하지만 피해자의 권리침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항 간의 내용이 정치하지 않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고소인·고발인 등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양식도 첨부해서 보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 열람·등사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통지방법 등은 수사 실무 등 사항이므로 법에 꼭 규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같은 경우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자의 많은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제한·조건 등을 정밀하게 넣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에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내용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을 정밀하게 정비해야지만 다른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검사의 수사의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사건을 발견한 경우 사경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권한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 사경의 직무상 범죄나 기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된다, 책무 조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용은 공무원의 고발, 형사고발 의무와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강제조치,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 통보한 것에 대해서 해당 수사기관이 결과를 통보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까지 넣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재수사요청과 관련하여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요청을 할 때 위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절차가 달라지면 나중에 적정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가수사인권보호관 등의 수사통제기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수사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을 설치해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보호관 밑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런 인권보호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각 수사기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 견제장치, 내부통제장치로 두는 내용인데요.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는 직제 관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고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보호관을 보좌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의 업무 범위와 심의 사항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각 수사기관에 수심위를 두는 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거라서 입법사항이 맞는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독립적인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중요 참고인·친족 등에 대한 위협의 우려를 독립적 구속사유로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예방 구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청

됩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입니다.

피해자의 형사소송참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범죄의 피해자 등이 공소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검사에게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판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 허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으로 피해자등이 공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9번, 고소인·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항목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 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을 사법경찰관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하여 검사에게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송치 전 수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번, 고소인 이의신청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불송치결정 통보 시 결정서 및 이의신청서 양식 첨부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부분은 불송치사건 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의신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어 열람·등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송치사건은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데 너무 폭넓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기한을 60일로 규정하는 부분은 경찰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 부여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한다면 검찰 처분 사건의 항고제도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를 두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항목입니다. 고소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인 등에게 과도하게 수사 내용이 노출되고 피의자 측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수사준칙상 수사기록의 경우 사건관계인 본인 진술 및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등사가 허용되는데 개정안은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등사에 준하여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열람·등사를 너무 폭넓게 허용하여 수사 보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12번, 검사의 수사의뢰 절차 신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경의 직무상 범죄 통보에 대해서만 사경의 조사 또는 수사 의무 규정이 있으나 송치사건 등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여 수사 요청한 경우 수사의뢰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13번, 재수사요청 항목입니다.

단순히 재수사 주체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재수사요청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면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수사요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수사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송치요구, 징계요구, 직무배제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14번, 국가수사인권보호관 등 수사통제기구 설치 항목입니다.

현행법상 사법적 통제 및 각종 기구들의 권한·기능 중복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의 기능은 이미 검사, 공소청이 시정조치요구 등으로 법령상 수행 중인 기능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등 사법적 통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조사·구제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각 수사기관 자체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 제도 등이 이미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업무 흐름에 따라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개정안의 각종 수사통제기구들은 절차 진행과 무관한 외부 기관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각 수사기관에 공수처, 중수청, 특사경 등 어떤 수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15번, 구속사유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추가하여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16번, 피해자의 형사소송참가제도 신설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도입되어 있는 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들, 피해자진술권, 개별 범죄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임특례, 열람·등사권 등과의 중복 충돌 우려는 없는지, 병존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과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15번과 16번은 추가 검토의견이므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재범의 위험성 등을 독립적 구속사유로 추가하는 부분은 구속의 목적은 수사과 재판 출석 및 형집행 담보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 독립된 구속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예방적·보안처분적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6번, 피해자의 형사소송 참가제도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상 피해자의 진술권을 법률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참가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의 구체적인 권한 규정이 없는 점 또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심리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판 단

계의 구속기간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제도가 서영교 의원님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차관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우선 심사자료 45페이지의 9번,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신설에 대해서는 기관 의견이 뭐라고 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송치 전 수사에 대해서 검사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 지금 검사가 송치 전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이의제기권에 대해서 법무부의 답변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효성 있는 조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다음으로 검사에게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이의제기를 받은 다음에 송치 전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어떤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검사가 이의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10번은요, 고소인 이의신청제도?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결정서 및 이의신청서 양식 첨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열람·등사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어서 열람·등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11번도 비슷한 취지시겠지요,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비슷한 취지인 것 같고.

12번, 검사의 수사의뢰 절차 신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답변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지금 2항 같은 경우에 직무상 범죄 통보에 대해서만 조사 또는 수사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3항에. 그런데 제1항의 송치사건 등에 대해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수사기록상에 사건의 직무상 범죄가 바로 발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 심사자료에 의하면 검사는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 사경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1항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맞습니까?

사경의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3항에 규정되어 있는, ‘2항의 요청을 수리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입건전조사 또는 수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 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건 2항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1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1항이요?

○**소위원장 김승원** 1항, 검사의 수사의뢰……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1항의 경우에, 검사가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 수사의뢰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건 시행세칙이나 다른 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지금 2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건전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요, 1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 우려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말씀이시고.

13번,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는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재수사 주체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실효성과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면도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리 심사자료에 법무부, 기관의 의견이 안 적혀져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정확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회신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을 주시면 국회에서도 그것을 반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저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검찰개혁지원TF단장 김준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